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1 . . . (제 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안 제8조의2 신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를 정함

나.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안 제9조의2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 재검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내압용기의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안 제9조의3 신설)

내압용기의 회수·교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라. 자동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안 제9조의4 신설)  
내압용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에 필요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함

마.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절차 등(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지정 절차·선정기준·업무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자동차기술 시범사업 절차 등(안 제13조의7 신설)

자동차기술의 이용·보급 및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선정기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차량

제4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별사업의 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 현황,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날로부터 20일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20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자동차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제9조(내압용기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압용기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내압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6.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용기제조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7.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는 것
8.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수리하는 것

②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 내압용기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것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압용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의 일부 생략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내압용기 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압용기의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조사·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 구축 비용

2.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3.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내압용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다음 연도

의 내압용기 재검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중대한 결함등)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내압용기에 의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압용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안전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손실보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내압용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과 함께 손실을 받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의견서를 제출 받은 상태에서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중 “제외”를 “포함”으로 한다.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별사업의 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 현황,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의5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전담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설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 시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전담기관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전담기관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관련 업무
2. 법 제68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4.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업무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활성화를 위한 관·학·산·연의 협력체계 구축
6.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 및 국제조화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및 국제인력 교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인력파견 등
7.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의7(시범사업의 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자동차매출액”을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 각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 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행위를 제외한 재검사 기간의 연장·유예, 경과통지 등 행정적 업무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4조제1항제9호·제10호”를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로, “제2항제5호·제7호”를 “제3항제5호·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제20조 본문 중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I.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등록번호 판발급대 행자	자동차 검사대 행자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50	100	1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50	200	2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00		

II.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 활용업
1. 거짓으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300	
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00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	100	50
5.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50	300	150
6.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	100	50
7.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300	200
8.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제7호	150 50	300 100	150 50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00	200	100
10.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	100	5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200	
12.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00
13.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300

14.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20	30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2호마목	20		
1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아목		30	
1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자목		50	
18.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0호	50	100	50
19.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마목			20

Ⅲ.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1호	해당 자동차·자동차 부품·내압용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3호	



---

비고: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부품·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개수(대수)에 자동차·자동차부품·내압용기 각각의 판매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 <개정 2010.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500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나.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경우 1) 10일 이내인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법 제84조제2항 제1호·제5호	50 5 1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호	50
3.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3호	10
4.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 제4호	30
5.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 제1호	30
6.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84조제3항 제2호	2 1

<p>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p> <p>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p> <p>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마다</p> <p>나.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p>	<p>법 제84조제3항 제2호</p>	<p>5</p> <p>1</p> <p>20</p>
<p>8.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p> <p>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p>	<p>법 제84조제2항 제6호</p>	<p>5</p> <p>1</p>
<p>9.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p> <p>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p> <p>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p> <p>나.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7호</p>	<p>5</p> <p>1</p> <p>10</p>
<p>10.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자동차의 경우</p> <p>나. 이륜자동차의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8호</p>	<p>5</p> <p>2</p>

<p>11.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9호</p>	<p>100</p>
<p>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극심한 교통체증 등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0호</p>	<p>50 10 5</p>
<p>13.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간을 경과한 경우  1)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다.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1호</p>	<p>5 1 50 10</p>
<p>14.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p>	<p>법 제84조제2항 제12호</p>	<p>3 1</p>
<p>15.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가.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 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p>	<p>법 제84조제2항 제13호</p>	<p>100</p>

<p>기록계</p> <p>나.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제8조제2항제7호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p> <p>다. 제8조제2항제11호 및 제19호</p> <p>라.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제3호·제6호·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p>		<p>30</p> <p>5</p> <p>3</p>
<p>16.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4호</p>	<p>100</p>
<p>17.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5호</p>	<p>100</p>
<p>18.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 제3호</p>	<p>50</p>
<p>18의2.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5호의2</p>	<p>10</p>
<p>19.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p> <p>나.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p>	<p>법 제84조제3항 제4호</p>	<p>1</p> <p>1</p>
<p>20.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p>	<p>법 제84조제3항 제5호·제6호</p>	

<p>니한 경우</p> <p>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p> <p>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p>		<p>2</p> <p>1</p>
<p>21.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6호</p>	<p>10</p>
<p>22.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p> <p>가.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p> <p>나.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p> <p>1)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p> <p>2)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p>	<p>법 제84조제2항 제17호</p>	<p>100</p> <p>30</p> <p>1</p>
<p>23.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제2항 제18호</p>	<p>50</p>
<p>2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p> <p>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p> <p>다.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 제2호</p>	<p>2</p> <p>6</p> <p>10</p>
<p>2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 제2호</p>	<p>20</p>
<p>26.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 제7호</p>	<p>30</p>
<p>27.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p>	<p>법 제84조제2항 제19호</p>	

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가.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나.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0 3
28.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0호	100
29.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1호	100 10
30.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2호	30
31.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인인 경우 나.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3호	70 35
3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8호	20

비고:

- 제8호·제9호가목 및 제22호가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금액은 각각 50만원으로, 제6호·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제1의2호가목 및 제13호가목에 함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의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3호가목 및 제14호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개정 2010.2.5>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3호	300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00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300
(2) (1)외의 점검·정비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3.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10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

주: 나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한도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차량</p> <p><u>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u></p> <p><u>①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p> <p><u>1.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별사업의 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u></p> <p><u>2. 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u></p> <p><u>3. 단순 현황,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u></p>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된 날로부터 20일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20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2(자동차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신 설>

제9조(내압용기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압용기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  
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  
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내압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  
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6.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  
차제작자·용기제조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7.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용기밸  
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  
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는 것
8.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  
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  
한다)의 등록을 한 자(내압용  
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로 한  
정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자  
동차용 내압용기에 부착된 용  
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수리하는 것

<신 설>

②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 내압용기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것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압용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의 일부 생략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내압용기 재검사 비용

의 지원) ①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압용기의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조사·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 구축 비용

2.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3.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

<신 설>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내압용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다음 연도의 내압용기 재검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중대한 결함등)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내압용기에 의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중  
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압용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안전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손실보상) ① 국토해양  
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5항  
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  
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  
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에 따른 내압용기 허가관청  
· 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  
과 함께 손실을 받은 사업자와  
협약하여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손실보상  
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  
1항에 따른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의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생략)

<신설>

견서를 제출 받은 상태에서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  
-----  
-----  
-----.

1. ----- 포함 -----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별사업의 예산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 현황, 통계자료 등의

<신 설>

수정·보완,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의5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전담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신 설>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설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 시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전담기관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전담기관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업무 범

위)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관련 업무
2. 법 제68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4.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업무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활성화를 위한 관·학·산·연의 협력체계 구축
6.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 및 국제조화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및 국제인력 교류, 해외 사무소 설치 및 인력파견 등
7.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의7(시범사업의 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

<신 설>

8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자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 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의2. ~ 8의2. (생략)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

-----  
-----  
-----  
-----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 각각의 매출액-----  
-----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법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행위를 제외한 재검사 기간의 연장·유예, 경과통지 등 행정적 업무를 말한다)

1의2. ~ 8의2. (현행과 같음)

9. -----  
----- 제84조 제2항제9호·제10호-----

2항제5호·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생략)

② (생략)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23. (생략)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 35. (생략)

④ (생략)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 ⑧

~~제3항제5호·제7호~~

-----  
-----  
-----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23. (현행과 같음)

<삭제>

25. ~ 3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 ⑧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691